

주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 10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5. 8. 31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조례 제4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조례 제37조의 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 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M²에서 700M²로 확대 (조례 제39조의 2)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조례 제39조의 3)
-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함 → 1, 2급 관사에 한함)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중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제1호중 (400M² 이하의 토지)를 (700M²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 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 7.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중요재산)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p><u>1. 1전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u></p> <p><u>2. 토지에 있어서는 1전당 5천제곱미터이상</u></p> <p><u>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u></p> <p><u>③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u>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u></p> <p><u>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u></p> <p><u>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u></p> <p><u>4. 담해 재산에 인점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u></p> <p><u>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 초에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u></p> <p><u>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담해재산의 구체 적인 여건에 따라 1전으로 하여 취득 또 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u></p>	제4조(중요재산)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 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 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처 분을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 기 전까지</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등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 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전 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 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 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 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 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 규모토지(<u>400M² 이하의 토지</u>)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 - - - - - - - - - <u>(700M² 이 하의 토지)</u> -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 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 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 - - -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 2급관사에 한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수도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 2급관사에 한함)